

# 가락파출소 대기실 보수 및 기타공사

◆ 시 방 서 ◆

2006. 03.

서울특별시송파소방서

#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가락파출소 대기실 보수 및 기타공사

나) 위치 : 가락파출소 내

다) 공사종별 : 대기실등보수

라) 준공기한 : 착공일로부터 일

마) 공사개요 :

1) 층 고 ( 바닥에서 천정마감까지 )

층별 동별	지층	1 층	2 층	3 층	층	옥탑층	비 고
	벽장 설치	보수	보수	보수		해당없음	

2) 공사종목

가. 대기실 보수

나. 사무실 부분보수

다. 기타실 내부보수

라. 바닥재 교체

## 2. 특 기 시 방

### 가) 가설공사

#### 1) 가설사무소 겸 창고

종 류	용 도	규 모	구 조	설 치 장 소
가설사무소 겸 창고	도급자 사무실	m <sup>2</sup>		현장내 적재

#### 2) 바닥재보양 : 부직포 설치

### 나) 철근콘크리트공사(해당없음)

#### 1) 콘크리트인력타설= 1 : 2 : 4

#### 2) 거 푸 집 : 합판 4회 사용(필요부분사용)

### 다) 조적공사(해당없음)

#### 1) 시멘트벽돌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표준형 80 KG/cm <sup>2</sup>		

### 라) 미장, 타일, 방수, 석공사

#### 1) 미 장 공 사 - 몰탈바르기

종 별	외벽몰탈	내벽몰탈	비 고
두께	24 MM	18 MM	

#### 2) 타일공사

종 별	사용개소	형상·치수	색갈.광택	비 고

3) 방 수 공 사

종 별	시 공 개 소	비 고
액체방수 1종		
액체방수 2종		

4) 석 공 사

종 별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마). 수장,도장공사

종 류	규 격	비 고
목재칸막이	제작	대기실내부
무석면흡음텍스	600×300×12.0T	대기실천정
비닐무석면타일	450×450×3.0T	복도, 사무실바닥
수성페인트	KSM 5320 1급 내·외벽 2,3회	내외부페인트마감

바). 창호 및 유리공사 :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한다.

종 류	규 격	비 고
후로아힌지	KS 3호, K-8300	강화도어
푸 쉬 버 튼	P.D 출입문	시건장치
강화도어후레임	THK 1.2이상	

사) 철거공사

: 대기실 및 기타실내부 철거 후 보수

- 아) 본 건축공사의 시방은 별첨특기시방서(도면에 기재된 시방포함) 이외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자) 품질관리 - 본 공사의 자재 등은 KS품을 사용하며, 자재 반입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 차) 본 공사 시행시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카) 구조물 철거시 타 부분에 손상 및 오손되지 않게 주의하여 철거할 것이며 만약, 철거로 인한 손상 및 오손 부분이 발생할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귀 하여야 함.
- 타) 구조물 철거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 파)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 3. 일 반 시 방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4 장	조적공사
제 5 장	금속공사
제 6 장	방수공사
제 7 장	창호공사
제 8 장	유리공사
제 9 장	타일공사
제 10 장	미장공사
제 11 장	도장공사
제 12 장	수장공사
제 13 장	잡 공 사

# 제 1 장 총 칙

## 1.1 적용범위

- 1.1.1 본 공사는 본 지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지방서”에 준하고 건축법.령. 규칙. 건설업법 등의 대한민국 건설관련 모든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 1.1.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 1.2 용어의 정의

- 1.2.1 “감독관”라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공사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 기술관리)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 1.2.2 “도급자”라함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2.3 “시공자”라함은 계약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한다.

## 1.3 설계도서 적용 순서

- 1. 특기 지방서
- 2. 본 지방서
- 3. 설 계 도
- 4.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지방서 및 관련법규

## 1.4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지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1.5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기구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1.6 재 료

### 1.6.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본 지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시중 최상품 및 한국 공업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1.6.2 견본품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6.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1.6.4 시험

1) 도면 또는 본 지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할 수 있다.

### 1.6.5 검사, 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 규격품을 표준으로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1.6.6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완료후 합격 반입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1.6.7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해에 따른 제반문제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 1.7 기존건물 및 시설 해체

1.7.1 기존건물 및 기존시설물을 철거할 때는 파괴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고 민원 발생시 시공사 책임 하에 해결한다.

1.7.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1.8 시공검사

1.8.1 각 공사부분은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1.8.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 1.9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아래 각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와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 인원의 안정정비, 재해예방, 시설물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10 보 양

각 종별로 명시된것 외에 인접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1 뒤끝청소 및 원상복구

1.11.1 뒤끝청소

공사 완료 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1.11.2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 기간내에 원상 복구한다.

1.12 준 공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허가 관청의 건설의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필증을 첨부 하여야한다.

1.13 건물 인계인수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후 건물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 제 2 장 가 설 공 사

### 1.1 적 용 범 위

본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가설건물 등 기타 필요한 제반공사 보조 시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 1.2 재해 방지

#### 1.2.1 재해 방지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 1.2.2 안전표시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하여야 한다.

#### 1.2.3 기타

각종 샤프트 등 개구부에 시공중 안전을 위한 그물망 또는 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 1.3 공사용 각종 설비

급수, 배수, 동력 및 진동등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1.4 보 양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규 격	비 고
타 일 스테인레스철판	툽 밥 하 드 롱 지	신 품	

### 1.5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 1.6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저장소의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 1.7 현장 가설 사무소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에 필요한 가설사무소, 창고, 등의 가설건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3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사항없음

## 제 4 장 조 직 공 사

### 1.1 시멘트 벽돌

#### 1.1.1 재 료

- 1) 시멘트 벽돌 : KS 80kg/cm<sup>2</sup> 강도 이상 (KSF 4004의 규정에 합격한 것)
- 2) 쌓기용 몰탈 배합비는 시멘트, 모래의 용적비를 1:2으로 한다.

### 1.2 기타사항

#### 1.2.1 인방보 설치

- 1) 창호 및 개구부가 생기는 부분의 상부는 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한다.
- 2) 개구부의 폭마다 좌,우가 각각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 3) 인방보 설치시 한쪽면 혹은 양쪽면이 콘크리트면에 설치되는곳은 연결철물로 긴결하여 인방보가 절대로 처짐이 없도록 한다.
- 4) 인방보 시공전 개구부 폭 및 조건 ( 연결철물로 긴결해야될곳 )을 파악하여 인방보 공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 제 5 장 금 속 공 사

### 1.1 총 칙

####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SHOP DWG. 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 1.1.1.1 재 료

- (1)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의 소재,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2) 설치용 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LEEVE 및 DRIVE PIN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하여 사용가부를 정한다.

#### 1.1.1.2 견본품 . 기타

- (1) 기성 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2) 기성 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사용하고,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1.1.1.3 녹막이 처리

-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1회 칠한다.
-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받을 우려가 있을때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 (3) 현장, 반입후 녹막이 칠의 손상 부분 또는 박리 부분은 곧 보수한다.

#### 1.1.1.4 보양 및 청소

-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형짚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 (2) 공사완료후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등을 써서 닦는다.

## 제 6 장 방 수 공 사

### 1.1 바탕면 시공

- 1.1.1 방수층 바탕면은 방수공사에 앞서 청소하고 모체에 금이 가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 등은 완전히 보수한다.

### 1.2 액체방수

- 1.2.1 액체방수는 건설부 표준시방서 제12장 표12.3.2.에 따르며 1차 방수인경우 2종, 2차 방수인 경우 1종으로 하고, 아래 순서로 시공한다.

(1) 1종 (C종) : 방수용액 칠투 -> 방수시멘트 풀칠 -> 방수용액 칠투 -> 방수시멘트 풀칠 -> 방수모르터 바름 -> 방수용액 칠투 -> 방수시멘트 풀칠 -> 방수모르터 바름

(2) 2종 (D종) : 방수용액 칠투 -> 방수시멘트 풀칠 -> 방수용액 칠투 -> 방수시멘트 풀칠 -> 방수용액 칠투 -> 방수모르터 바름

(3) 방수제의 혼합비율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른다.

#### 1.2.2 적 용 부 위

화장실, 기타 설계도에 요하는 부분

- 1.2.3 방수제의 품질은 아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65%이상 이어야 한다.

(4) 투수비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8% 이하이어야 한다.

### 1.3 씰링(Sealing)공사

#### 1.3.1 일 반 사 항

- (1) 씰링재 충전개소의 상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2. 평판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및 부서짐이 없을 것.

3.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먼지 등의 부착 저해요소가 없을 것.

- (2) 현장 반압후 고온다습한 장소 및 직사일관, 우로를 맞는 장소는 피하여 밀봉하여 보관하고, 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3) 공사완료후 면집부착, 손상 및 더러움등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 (4) 필요에 따른 시험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1.3.2 재료 및 적용부위

- (1) KS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줄눈 및 드레인 주위, 창틀 주위에는 2액형 폴리우레탄계

실란트로 코킹하고 유리주위에는 1액형 실리콘계 실란트를 사용한다.

(2) 씨링재

1) 1성분형 씨링재는 뚜껑을 연후에 피막이 있으면 이를 제거한다.

2) 2성분형 씨링재와 그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의 배합비에 따라 가사 시간내에 충분히 반죽한다.

3) 조제된 씨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건(gun)에 따라 가사 시간내에 충분히 반죽한다.

(3) 프라이머는 씨링재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4) 뒷채움재, 본드 브레이커 및 양생 테이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3.3 시 공

(1)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줄눈이 깊거나 관통되어 있는 경우에도 뒷 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경우에는 줄눈 바닥에 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코오킹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표면보양 또는 줄눈 선을 일직선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마스킹 테이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시공후 즉시 제거하고 청결히 한다.

(3) 충전은 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은 완전히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후에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 충전부분 이외에 부착된 씨링재는 피착제를 침해하지 않는 용재로 신속히 청소한다.

1.4. 매설철물 기타의 접착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 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며 밀착 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의 주위에 결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1.5 구석 - 모서리 및 치켜 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모서리.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누수가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때에는 방수용액 칠투와 방수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 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 일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40cm 이상 치켜올리고, 윗끝을 벽돌벽에 깊이 물러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 제 7 장 창 호 공 사

### 1.1 일반사항

- (1) 창호는 도면에 지시된 형태를 따르고, 치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 (2) 각창의 위치, 높이 창호 철물의 종류와 사용개소, 기밀편, 구조상세, 조립방법, 창호 분류기호를 표시한 시공제작도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1.2 재 료

#### 1.2.1 알루미늄 창호공사

- (1) 기성 창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샷시바의 재질은 KR D6759에 합격한 것으로 KS F45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3) 틀재의 성분은 KS F6759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단면의 형상 및 수는 KS F4506에 따른다. 이때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하며 허용오차 범위는  $\pm 0.5\text{mm}$ 이하로 한다.
- (4) 바람막이, 모막이 및 보조재료와 부속재료는 건설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 1.3 특수 창호공사

#### 1.3.1 적 용 범 위

스테인레스 또는 기타 특수철문, 무테문 (강화통유리문), 접문, 행가도아, 차폐문 등

#### 1.3.2 재 료

- (1)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 KS 규격품이 아닌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 (2) 적용부위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 1.3.3 제작 및 설치

제작자 시방에 준하여 제작 및 시공하되 SHOP 도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 1.4 창호철물

#### 1.4.1 재료 및 일반사항

- (1) 창호철물은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2) 창호 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은 도면에 따른다.
- (3) 화장실에 사용하는 철물은 (스테인리스, 아연합금, 황동 또는 청동)으로 하되, 스테인리스 이외의 것은 크롬도금 한다.
- (4) 철물 부착부분은 견고하게 보강한다.
- (5) 보임부의 마무리는 (연마 마무리 또는 도금 마무리)로 한다.

## 제 8 장 유 리 공 사

###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유리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등을 중요 목적으로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 창호도에 준한다.

1.1.2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 1.2 공작도

중요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1.3 재 료

#### 1.3.1 플로트 유리 (FLOAT GLASS)

(1) 품 질 :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FLOAT POLISHED GLASS)의 4.2항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것으로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 1.3.2 강화유리

(1) 품 질 : KSL 2002 강화유리 (TEMPERED GLASS)의 규정에 합격한것이어야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 1.4 유리 끼우기

(1) 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유리 밑부분의 샤프 요철은 없어야 하고, 유리 무게는 세팅블럭이 균등하게 지지할수 있도록 2개 유리의 1/4 지점에 놓아야 한다.

(3) 코킹재는 코래실 MS 9420 으로 한다.

(4) 백업재는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하여 단열효과가 좋은 폴리 필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5) 세팅블럭은 쇼아 경도 90도의 네오프렌(NEOPRENE) 고무를 사용한다.

(6) 고정길이는 5-8mm 이상으로 하고, 마무리면은 구배 3mm 이상이 되도록 하며, 물이 쉽게 빠지게 한다.

(7) 창틀에 접하는 유리의 깊이는 다음과 같이 기준한다.

18m/m 이하 : 10m/m

## 제 9 장 타 일 공 사

해당사항없음

## 제 10 장 미 장 공사

### 1.1 재 료

#### 1.1.1 시멘트

- (1)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로서 KS L 5201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2) 백색 시멘트는 KS F 520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3)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1.2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아니한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과 같다.

종 별	체눈의 크기	입도별 체외 통과율					
		5	2.5	1.2	0.6	0.3	0.15
A종 (바닥용및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4-65	10-35	2-10
B종 (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 (정벌바름 및 얇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 1.1.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 1.1.4 혼화재

AE 제, 감수제등의 편 활성재를 혼합할때에는 모르타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용량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5 기타재료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는 기타재료는 건설부표준시방서 15.3.2 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 1.1.6 재료의 배합

별도의 특기가 없는 배합은 건설부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 된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1.2 시 공

#### 1.2.1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것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넣은 다음 1주일 방치한다.

시멘트 모르타르가 부착하기 어려울때에는 시멘트풀을 미리 문지르고나서 덧붙여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다.

(2) 콘크리트 면이 너무 평활하여 시멘트 모르타르의 부착이 염려되는곳은 최소 3 mm 깊이로 정으로 쪼아낸다.

(3)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흡수를 조정하고 작업착수하여야 한다.

(4) 근접한 타부재와 마감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 1.2.2 바르기

### 1.2.2.1 벽바르기

#### (1) 초벌바르기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 (2) 재벌 바르기

구석모퉁이, 개탕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고르기를 한다.

#### (3) 정벌 바르기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 (4) 마무리

마무리의 종류는 시공개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시 공 개 소
쇠 흙 손	보통칠을하는바탕, 벽지바탕, 사무실등의 분사칠 하는 바탕, 방수바탕
나무흙손	타일바탕, 기계실등의 분사칠 하는 바탕

### 1.2.2.2. 바닥바르기

- (1)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적은 된비빔 몰탈을 나무흙손으로 발라 표면에 수분이 스며나오게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 (2)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타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 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이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 1.2.2.3 청소 및 보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변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 반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2-3 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 제 11 장 도장공사

## 1.1 일반사항

- (1)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 (2) 정별칠의 색상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3) 최종 색상이 감독원이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 (4) 도장 완료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 (5) 칠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한 곳의 주변.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 1.2 재 료

- (1) KS 규격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동등이상의 제품
- (2) 제조 년월일, 제품명 등에 대해서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3) 도료는 상표가 완전해야하고 반입 전에는 개봉하지 않는다.
- (4) 도료는 바탕칠에서 정별칠까지 동일 제조소의 제품을 사용한다.

## 1.3 수성 내부용

적용부위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플라스터등 건물의 내부용 마감,						
표면처리	1. CEMENT계 소지는 30일(21°C 기준)이상 양생 시켜야 한다. * 수분 함유 허용 기준 : 6% 이하 * 적합한 PH값 기준 : PH7 - PH9 2.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후 적용해야 한다.						
도장사양	도장 순서	제 품 명	도막두께 ( $\mu$ )	신나	S.V.R (%)	도장방법	색 상
	1ST	KSM 5320 합성수지 에멀전 페인트	40	물	30-35	B.R	유광 또는 무광, 모든색
	2ND	KSM 5320 합성수지 에멀전 페인트	40	물	30-35	B.R.S	
		계 : 80					
도장시 주의사항	1. 5°C 이하의 온도조건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시고, 저장 수송중 얼지 않도록 유의할 것						

NOTE) 도장방법의 약자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S.V.R = SOLID VOLUME RATIO (고형분 용적비)

1.4 수성 외부용

적용부위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플라스터등 건물의 외부용 마감,						
표면처리	1. CEMENT계 소지는 30일(21°C 기준)이상 양생 시켜야 한다. * 수분 함유 허용 기준 : 6% 이하 * 적합한 PH값 기준 : PH7 - PH9 2.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후 적용해야 한다.						
도장사양	도장 순서	제 품 명	도막두께 ( $\mu$ )	신나	S.V.R (%)	도장방법	색 상
	1ST	KSM 5310 합성수지 에멀전 페인트	50	물	37	B.R	유광 또는 무광, 모든색
	2ND	KSM 5310 합성수지 에멀전 페인트	50	물	37	B.R.S	
계 : 100							
도장시 주의사항	1. 5°C 이하의 온도조건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하고, 저장 수송중 얼지 않도록 유의할 것						

NOTE) 도장방법의 약자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S.V.R = SOLID VOLUME RATIO (고형분 용적비)

1.5 조합페인트 철제용 (필요시 적용할것)

적용부위	건축물 등 철재구조물 및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철물						
표면처리	1. 블라스팅 세정 SA 1(1/2)의 표면처리 등급으로 이물질 제거						
도장사양	도장 순서	제 품 명	도막두께 ( $\mu$ )	신나	S.V.R (%)	도장방법	색 상
	1ST	방청 페인트 (광명단) KSM 5311	30	012	51	B.R.S	반광오렌지색
	2ND	방청 페인트 (광명단) KSM 5311	30	012	51	B.R.S	반광오렌지색
	3RD	조합 페인트 KSM 5312	30	012	51-54	B.R.S	유광 백색
	4TH	조합 페인트 KSM 5312	30	012	51-54	B.R.S	유광 미색
계 : 120							
도장시 주의사항	1.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작업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광명단은 납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납중독에 주의할 것						

NOTE) 도장방법의 약자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S.V.R = SOLID VOLUME RATIO (고형분 용적비)

상기 KS 제품외에 동등이상의 일반제품도 감독원이 승인이 있으면 사용가능함.

## 제 12 장 수 장 공 사

### 1.1 적용범위

- (1) 이 지방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지방에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 도면에 따른다.
- (2)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을 본 지방을 표준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3) 본 지방 이외의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1.2 공작도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내외장재 및 칸막이 공사전에 설치도면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1.3 재 료

- (1) 재료는 도면 및 특기지방서에 준하고 표기가 없는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1.4 시공방법

전문업체 또는 제작자 지방에 따라 시공하되 미리 지방서 및 제작도 전개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 13 장    잡    공    사

### 1.1    일반범위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필요한 경우 시공도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한다.